교수회규정 3-1-2

규정번호 3-1-2
제정일자 1982.10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9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구성한다. (개정 2019.07.30)
제3조(회의) ① 교수회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.
② 교수회의 안건 중 심의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학과장 또는 학부장회의(행정보직교수 포함) 심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.
제4조(소집 및 의결)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총장이 부재 시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교수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5조(심의사항) ①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입학 및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
2.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제6조(업무관리) 교수회의는 교무처에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> <생략>

<3>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①, 제4조①, 제5조①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
<4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<생략>

<2>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②항 중 “계열부장”을 각각 “학부장”으로 한다.

<3> - <49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12.6.4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교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② 중 “과반수 이상”을 각각 “과반수”로 한다.

<2> - <13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1항제3호)